

공동기기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원은 세종대학교 공동기기원(이하 “원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원은 공동기기를 통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의 첨단 연구기기를 확보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교의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공동기기의 정의) “공동기기”라 함은 연구 및 실험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기기들을 말한다.

제4조(업무) 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동기기의 선정, 유지 및 관리
2. 교내 연구,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촉진
3. 연구, 실험실습용 연구기기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의 연구기기 확충
4.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
5. 기타 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원장) ①원장은 교원 중에서 연구산학협력처장(또는 산학협력단장)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원장은 원을 대표하며 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조직 및 업무) ①원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하부조직으로 나노기술센터, 바이오기술센터, 정보기술센터 및 공동기기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, 각 센터는 내부규정을 둔다.

②각 센터에는 R&D 재원 및 학교의 대응자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운영하는 분석실 등을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.

③전 항의 조직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,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 임명한다.

⑤연구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는 세종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따른다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위원은 공동기기원장, 산학협력단장, 하부조직장(센터장)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공동기기원장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동기기의 선정, 도입, 활용,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
3.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
4.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5. 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원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9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(재정) 원의 재정은 공동기기 분석서비스요금과 사용요금, 기타 수입금 및 교비로 충당한다.

제11조(예산) 원의 당해연도 예산은 산하 센터의 전년도 분석서비스 요금과 사용요금 및 당해연도의 산학협력단 지원금 등으로 편성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 원의 회계연도는 세종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5 장 기 타

제13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